한림대학교
교수자를 위한 수업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2026. 1. 22.(목). / 교육혁신센터

1 목적 및 기본 관점

- 본 가이드라인은 한림대학교의 교수자가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함에 있어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성형 AI를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고 학습을 보조하는 비판적 파트너로 정의한다.
- 생성형 AI 활용의 최종적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귀속된다.

2 AI 활용 기본 원칙

2.1 학문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

-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가장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 AI 활용 여부와 범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최종 산출물의 학문적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된다.

2.2 비판적 수용(Critical Engagement)

- ChatGPT, Google Gemini 등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오류(Hallucination), 최신성 부족, 데이터 편향을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AI의 응답은 출발점일 뿐, 정답이 아니며, 반드시 인간의 검증과 판단을 거쳐야 한다.

2.3 데이터 보호 및 윤리(Data Privacy & Ethics)

- 개인정보, 성적, 비공개 강의자료, 연구 참여자 정보, 대학의 내부 자료는 생성형 AI 프롬프트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2.4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

- AI 활용의 목적, 범위,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AI 활용으로 생성된 산출물에 대한 책임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귀속된다.

3 교수자의 AI 활용 방침 결정 및 명시 의무

- 교수자는 수업 목적, 교수·학습 방법, 과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활용 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AI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 학생의 AI 활용 과정이 학습 과정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활용 방식의 기록 또는 제출 방법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

- **해당 과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의 유형**
- **사고 과정과 산출물 중 평가의 중심 요소**
- **AI 활용이 학습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AI 활용이 평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 **교수자는 결정한 AI 활용 방침을 역량중심 Syllabus에 명시하고,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4 학생 AI 사용 허용 기준(A~E 단계)

① 기준 A 전면 허용

- **과제 및 수업 활동 전반에서 학생의 AI 사용을 허용한다.**
- **단, 학생은 사용한 AI의 제품명, 활용 목적,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최종 결과물의 책임은 학생에게 귀속된다.**

[기준 A] 전면 허용 사례 예시

- **(예시 1) 보고서 작성 과제**
 - 학생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보고서의 초안을 생성한다. 이후 보고서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AI가 제시한 주장과 근거를 원문 문헌을 통해 직접 검증한다. 학생은 참고문헌을 APA 양식에 따라 정리하고, 사사 항목에 AI 활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한다.
- **(예시 2) 프로그래밍 과제**
 - 학생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함수의 초안 코드를 생성한다. 이후 테스트 케이스 설계, 오류 수정, 성능 비교 및 최종 코드 결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한다. 학생은 AI를 사고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과제물에 명시한다.

② 기준 B 조건부 허용

- **개념 이해, 구조 점검, 초안 작성 등 사고 보조 목적의 AI 사용만 허용한다.**
- **핵심 내용 분석, 결론 도출, 평가 대상이 되는 판단을 AI가 대체하는 사용은 제한한다.**

[기준 B] 조건부 허용 예시

- **(예시 1) 개념 이해 및 구조 설계**
 - 학생은 논문 또는 전공 서적을 읽기 전, 생성형 AI에게 핵심 개념과 용어 설명을 요청한다. 이후 개념 간 관계를 도식화하고, 요약 노트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다.
- **(예시 2) 초안 점검**
 - 학생은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생성형 AI에게 입력하고, 문단 간 논리 흐름 점검을 요청한다. AI가 제안한 수정 의견을 참고하되, 실제 수정 여부와 방향은 학생이 판단한다.

③ 기준 C 도구적 사용 허용

- **맞춤법 검사, 문장 다듬기, 번역, 형식 변환, 참고문헌 정리 등 도구적 기능만 사용을 허용한다.**
- **내용 생성, 요약, 해석, 아이디어 제안 기능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준 C] 도구적 사용 허용 예시

- **(예시 1) 문장 및 형식 교정**
 - 학생은 이미 작성한 보고서의 문장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다듬는다. 맞춤법 검사, 문법 오류 수정, 어휘 선택 보완만 수행하며, 내용 추가나 재해석은 하지 않는다.
- **(예시 2) 번역 및 참고문헌 정리**
 - 학생은 학술지 논문의 국문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다. 또는 참고문헌 목록을 APA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AI를 사용한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의 핵심 내용과 해석은 학생이 직접 작성한다.

④ 기준 D 제한적 허용

- **교수자가 지정한 특정 과제 수행 단계에서만 AI 사용을 허용한다.**

[기준 D] 제한적 허용 예시

- **(예시 1) 특정 단계 허용**
 - 교수자는 프로젝트 과제 중 '아이디어 발산 단계'에서만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정의, 해결 방안 선택,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한다.
- **(예시 2) 수업 활동 중 제한적 활용**
 - 교수자는 수업 중 실습 시간에 한하여 AI를 활용한 예시 탐색을 허용하고, 과제 제출물 작성 과정에서는 AI 사용을 금지한다.

⑤ 기준 E 전면 금지

- **해당 교과목 또는 과제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5 학생 과제물에서의 AI 활용 표기 및 책임

- 학생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경우, 과제물의 사사 또는 교수자가 지정한 항목에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AI 활용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 **사용한 AI 도구의 명칭, 버전, 활용 목적 및 범위**
 - **주요 프롬프트 내용의 요약 또는 핵심 발췌**
 - **생성형 AI 대화 이력의 공유 링크 또는 PDF 파일**

- 교수자는 수업 특성에 따라 위 방식 중 일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생성형 AI의 출력 결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으며, 제출물의 학문적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귀속된다.
- 단, 맞춤법 검사, 번역 등 단순 도구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6 평가 관련 AI 활용 및 학문적 부정행위 처리

- **교수자는 AI 활용 방침에 따라 과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시험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는 시험 유형, 감독 방식, 평가 목적에 따라 사전에 결정하여 안내한다.**
- 허용 범위를 초과한 AI 활용, AI 생성 결과물의 무단 제출, 출처 미표시는 학문적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 그 외 학문적 부정행위의 판단 및 처리는 학내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생성형 AI Detection 도구 활용

- 생성형 AI Detection 도구(예: Turnitin-AI detection, 카피킬러-GPT killer)는 과제, 보고서, 프로젝트의 진위성 검토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단, 해당 도구의 결과만으로 학문적 부정행위를 단정하거나 성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 최종 판단은 학생의 소명과 교수자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8 학생 AI 리터러시 교육 제공 권고

- 교수자는 학기 초 또는 주요 과제 이전에 AI의 한계, 오류 가능성, 검증 필요성에 대해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 이를 통해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분석 및 재구성하는 학습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기술의 변화와 교육 환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생성형 AI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적 성찰과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